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850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곽규택 · 김미애 · 정성국  
조배숙 · 나경원 · 주진우  
송석준 · 신동욱 · 서지영  
유상범 · 조승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 당연 퇴직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
  2.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었던 자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상실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용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자와 시행 이후 채용되는 자에 모두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11조의2(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다.</u></p> <p><u>1.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u></p> <p><u>2.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었던 자</u></p> <p><u>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u></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u></p> |

에는 그 효력은 상실된다.